

노부모부양 특별공급 |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(예비 포함)

| 구분 | 서류유형 | | 해당서류 | 발급기준 |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|
| | 필수 | 추가 (해당자) | | | |
| 공통 서류 | 0 | | 무주택서약서 | 본인 |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|
| | 0 | | 신분증 | 본인 | 주민등록증, 여권(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), 운전면허증 등 |
| | 0 | |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| 본인 | 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용 필수, 대리발급분 접수불가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능(단, 대리인계약불가) |
| | 0 | | 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 | 본인 |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, 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 |
| | 0 | 0 | | 배우자 |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 |
| | 0 | | 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 | 본인 |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 사항·사유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 |
| | 0 | |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| 본인 |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|
| | 0 | | 출입국사실증명원 | 본인 | 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경우 •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4.16.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|
| | | 0 | | 직계존속 | 국토교통부 「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」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|
| | | 0 | | 직계비속 | • 국토교통부 「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」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-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-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1년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|
| 0 | | 복무확인서 | 본인 |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(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) | |
|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| 0 | | 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 | 본인/자녀 | • 본인 :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자녀 : 만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|
| | 0 | |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| 피부양 직계존속 | •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•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|
| | 0 | | 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 | 피부양 직계존속 |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 |
| | 0 | | | 직계비속 |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 |
| 해외 근무자 (단신 부임) | 0 | | 해외체류 증빙서류 | 본인 | •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- 파견및출장명령서 •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-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• 근로자가 아닌 경우(※아래사항 반드시 제출)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|
| | 0 | |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| 본인 및 세대원 | •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-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, 연간183일을 초과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|
| | 0 | | 주민등록표등본 | 본인 및 직계존속 | •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"상세" 발급 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 |
| | 0 | | 주민등록표초본 | 직계존속 | •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-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포함 하여 "상세" 발급 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 |
| | 0 | | 출입국사실증명원 |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| •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•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|
|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 사항 | 0 | | 인감증명서 | 청약자 | 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발급용)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 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|
| | 0 | | 인감도장 | 청약자 |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|
| | 0 | | 위임장 | 청약자 |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 |
| | 0 | | 신분증 | 대리인 |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|

※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4.16(금)) 이후 발행분에 한함, '전체포함' 또는 '상세'로 발급